

# 조기재취업수당 안내(취업)

## 1.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(24년 수급자격 신청자)

- ① 수급신청일 기준 14일이 지난 후,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(퇴사일기준 65세이상자는 6개월이상)계속 고용된 경우
  - ② 취업한 대상자가 기준임금(574만원/월)미만 소득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
  - ③ 재취업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의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/2이상 남아 있어야 함  
예) 「120일의 경우 60일 이상」, 「180일의 경우 90일 이상」, 「240일의 경우 120일 이상」
  - ④ 12개월 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 
- 수차례에 걸쳐 재취업한 경우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일수 산정  
사례) 2024.6.30. 이직 → 2024.7.1. 재입사(O), 2024.6.30. 이직 → 2024.7.6 재입사(X)
  - ④-1.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월10일 이상 12개월간 연속 근무한 경우  
사례) 2024.6.5. 취업 → 2024.6.5. ~ 7.4. 기간중 10일 이상 근무시 1개월 인정
  - 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(재취업일과 재취업일 기준으로 2년 이내)
  - ⑥ 수급자격(실업급여)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었던 경우가 아닐 것
  - ⑦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(동일 사업주)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 것 (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)  
-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되거나 영업을 양도·양수하였을 경우 인수·합병·분할 또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의 사업주  
-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, 학교회계직원 등이 같은 사도 소재 국공립학교에 재입사하는 경우(사업주가 사도교육감으로 동일)
  - ⑧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자(자영업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)가 아닐 것
- ※ 기타사항  
-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외이사·비상임(근) 이사·감사 등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취업에 비해당  
- 공무원으로 채용시 조기재취업수당 비해당(다만 별정직, 임기제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 제외)

## 2. 제출서류

-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- ② 재직증명서 (사업장에서 발급한 것으로 12개월(만 65세이상자는 6개월)이상 근로사실이 확인)
- ③ 근로계약서 및 12개월(만65세이상 대상자는 6개월) 임금지급명세서

※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서식은 대구고용센터 홈페이지 [정보마당] -> [서식 자료실] -> 조기재취업수당 검색  
-> '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'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음

## 3. 청구방법

방문(대리인 가능), 등기우편, 인터넷(www.ei.go.kr - 첨부자료 스캔하여 업로드), 팩스접수 가능  
[문의 ☎ : 053-667-6000, 팩스 : 053-720-4021]

## 4. 지급액 : 구직급여일액 × 잔여급여일수(재취업일~수급기간만료일) × 1/2

## 5. 청구시점 및 유의사항

- ① 근무 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.
- ② 재취업 후 12개월(만 65세이상자는 6개월) 이내 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
- ③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한 경우,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인정 청구에 <재실업신고> 해야 함.
- ④ 청구시점 : 재취업일 기준 12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  
\* 퇴사일 기준 만 65세이상 대상자는 재취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
- ⑤ 처리기한 : 서류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4일 (실제 약 3주 소요)
- ⑥ 사전신청 대상 : 퇴사일 기준 만 65세이상 수급자중 6개월이상 계속 근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, 취업일부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(다만, 6개월이상 계속근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근로 이후 신청이 가능)